

2017년은 쇠고기 이력제 자료 공표 원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 이형우



쇠고기 이력제 자료 활용 배경

2017년은 소 사육 통계의 전환기가 되는 해이다. 기존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던 「가축동향」의 소 사육 통계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력제 자료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등록 신고 마릿수를 통계 수치로 공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쇠고기 이력제의 도입 목적과 취지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개체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위생 또는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게다가 소 및 쇠고기에 대한 위생·안전체계의 구축과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내 소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시행 초기에 위생 관련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도로서 축산농가의 생산, 이동, 출하 및 축산물 유통에 대한 거래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농가에 대한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기본적으로 쇠고기 이력제는 송아지 출생부터 사육, 도축, 포장처리 및 최종 소비하는 판매단계까지 일련의 이동경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다. 송아지가 출생하면 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서면 등으로 신고하고, 30일 이내(육우의 경우 7일)에 귀표부착 후 이력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소 양도·양수·폐사 시에는 5일 이내에 위탁기관에 신고하고,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에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이력번호 등의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축산농가의 신고를 기반으로 소 이동경로가 엄격하게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 정보 관리를 위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출생·양도·양수·폐사 등 개체의 상태가 변할 경우 농가 신고를 통해 12자리 개체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이력관리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축적 또는 변경하며 개체 이력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 개체마다 정보를 관리하여 축적되므로 이력제 자료는 표본조사를 통한 통계청 가축통계보다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쇠고기 이력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성이 검증되었기에 통계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축평원)와 합의 하에 가축동향 조사를 이력제 자료로 대체기로 한 것이다.

기존 가축동향 조사와 쇠고기 이력제 자료의 차이

현재 소 사육 마릿수 공식 통계는 「가축동향」 조사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축동향」 조사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축동향」 조사는 5년마다 시행하는 농림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총화추출을 통해 3,068개의 표본조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 농가의 전수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사육 규모별 가구, 연령별·성별 사육 마릿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매분기마다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현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방역의 효율성 도모와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력제 자료는 한우, 육우, 젖소 등 전국의 모든 소가 조사 대상이며, 신고할 때마다 자료가 축적되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축동향 조사와 쇠고기 이력제 자료 비교

구분	가축동향 조사	쇠고기 이력제
근거	· 통계법(국가통계 제11423호)	· 가축 및 축산물 이력에 관한 법률
목적	· 축산정책 수립과 축산부분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 소 질병 발생시 방역의 효율성 도모 ·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내용	· 사육규모별 가구수와 연령별·성별 사육마릿수 파악	· 축생부터 도축 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이력정보 관리
연혁	· 1976.12. 지정통계로 지정 · 2008.03. 통계청으로 이관	· 2008.12. 사육단계 의무시행 · 2009.06. 유통단계까지 의무시행 확대
대상	· 3,068개 표본조사(농림어업총조사를 모집단으로 총화추출) · 전수조사(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 농가)	· 전수조사(전국의 모든 소) · 소유주 혹은 농장 중심으로 개별농장번호 부여
기준	· 매분기(3, 6, 9, 12월) 1일 00시 기준	· 신고시(실시간 업데이트)
항목	· 소 종류, 암·수 구분, 3개월간 변동사항(생산, 폐사 등), 경영주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 출생연월일, 소 종류, 암·수 구분, 개체상태(출생, 양도, 양수, 폐사 등),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 등

자료 : 통계청, 「2017년 농어업통계 업무발전 토론회 자료집」

이력제 자료의 장점과 향후 공표 시기

그러면 이력제 자료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통계청 「가축동향」 조사는 소 사육 마릿수 통계를 1세 미만, 1~2세 미만, 2세 이상으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반해 이력제 자료는 개체별 생육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송아지 출생에서부터 1개월령, 2개월령, 3개월령 등 월령별 사육두수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월령별 분류체계는 정보 수요자들이 기존보다 정확한 한우 사육현황 정보 접근을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둘째, 「가축동향」 조사는 한우 전체를 집계하여 폐사와 출생 자료를 발표하는데 반해, 이력제 자료는 월별·월령별·성별로 분류한 자료로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월령별·성별·폐사율과 출생하는 송아지의 성비율 추정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력제 자료는 월령별로 세분화된 사육 정보의 자료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한 한우 수급모형보다 정밀한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추정된 월령별·성별·폐사율 및 도축률을 활용하여 코호트요소 기법을 적용한 모형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들은 정보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이러한 이력제 자료의 공표 시기는 2017년 3분기 이후에나 가능하리라 본다. 통계청에서는 쇠고기 이력제 시계열 안정화 및 개편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3분기 부터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가축동향조사를 이력제 자료로 대체하여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7년 2분기는 현행대로 추진하되, 이력제 자료와 가축동향 조사 결과를 병기하여 공표하기로 하였다.

감사원에서는 소 이력정보가 가축동향조사로 대체 시 연간 30억 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력제 자료 보완 및 향후 대응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쇠고기 이력제는 전수조사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의 지연신고, 귀표관리 소홀 등으로 자료 집계에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력제 자료가 축산농가의 신고를 기반으로 축적되고 있기에 지연·오류 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통계 수치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오차율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농가들의 자발적 신고를 생활화해야 하며 특히, 이력제 관리 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전문 통계 인력 및 관리인력 확보를 통한 위험능가를 발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력제 자료 공표에 앞서, 자료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한 중장기적 수급 변화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한우 시장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력제 기반의 수급 모형이 구축되면, 가임암소 및 송아지 생산 마릿수, 도축 마릿수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수급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 기존 통계의 시계열이 단절되고 쇠고기 이력제로 전면 대체될 경우 한우시장에 부분적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우업계 종사자가 기존에 인지하고 있는 사육 마릿수보다 약 20만 마리가 많다고 느껴지는 순간 공급과잉에 대한 심리적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급과잉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될 경우 한우시장에 가격 급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우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 이력제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이력제 자료는 공공재 성격을 띠는 만큼 치밀하게 준비해서 수요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지속적인 보완작업이 필요하다. ☺